

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안년월일 : 2006. 4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-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05. 8. 4),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이 개정(2006. 2. 8)됨에 따라
-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도의원 당해연도의 일비로 되어 있으나,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을 감안, 지급기준을 도의원 의정활동비로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도의원 당해연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회기수당””을 ““의정활동비””로, “회기수당을”을 “의정활동비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, 제2호 중 “일비의”를 “의정활동비의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보상금 지급기준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-----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-----
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 <u>회기수당</u> "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<u>회기수당</u> 을 말한다.	2. " <u>의정활동비</u> "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<u>의정활동비</u> 을 말한다.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보상금지급기준)	제4조(보상금지급기준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<u>일비의</u> 2년 분에 상당한 금액	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<u>의정활동비의</u> 2년 분에 상당한 금액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<u>일비의</u> 1년 분에 상당한 금액	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<u>의정활동비의</u> 1년 분에 상당한 금액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